

휴일에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 일시 : 2011. 6. 29(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정관 105호

주최 |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준),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토론회 프로그램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 인 사 : 이미경 의원

■ 발 제

- 발제 1 :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규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김남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발제 2 :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무제 법제화를 통한 유통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중소기업보호 등에 대한 종합 검토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 토 론

- 토론 1 : 야간노동의 건강영향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 토론 2 : 전기요금이 만들어낸 유통업체의 심야 연장 영업
(김보영 환경운동연합 간사)
- 토론 3 : 대형마트·SSM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일제 도입은 중소기업의 생존 방안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여성환경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 경실련,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목 차

인사

이미경 의원 / 2

발제

-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규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 5

김남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무제 법제화를 통한 유통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중소기업보호 등에 대한 종합 검토 / 23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토론

- 야간노동의 건강영향 / 49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 전기요금에 만들어진 유통업체의 심야 연장 영업 / 57

김보영 환경운동연합 간사

- 대형마트·SSM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일제 도입은 중소기업의 생존 방안 / 67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대형 유통업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96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대형 유통점은 시장 과포화 상태에 다달았고, 이로 인한 업체의 과다경쟁은 영업시간 연장이라는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영업시간 연장에 따라, 휴식 없는 근로환경에서의 노동자 건강문제,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권 침해문제, 야간영업으로 인한 에너지 과소비 문제, 중소기업들의 생존권 문제 등 그간 제기되어온 문제점들도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덴마크에서는 야간근무가 유방암에 영향을 준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형 유통점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80%가 여성근로자이며, 대부분의 여성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야간근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형 유통점의 여성 근로자들은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이혼비율이 일반 근로자의 2~3배에 달한다는 연구, 생활주기 변화로 인해 만성 소화불량, 우울증, 인격변화, 심혈관계질환 등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등은 대형 유통점의 야간근무가 단순히 소비자의 “편리함”만을 위해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뒷받침에 줍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WTO 협정과 FTA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은 불공정한 국내규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아닌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규제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영국·프랑스 등에서는 주중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휴일 영업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입점시에 대규모 점포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까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러 개정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구조적 한계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6. 29.

국회의원 | 이미경



발제 1 | 휴일에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규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김남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규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김남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1. 대규모 유통점의 영업시간규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의 다양한 측면

(1) 대규모 유통점의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과도한 영업시간

1996년 김영삼 정부는 유통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관련 규제 정책을 크게 완화하였다. 1997년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규모소매점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시장은 급속히 팽창하였고, 소수의 유통회사들이 유통시장 전반을 주도하게 되었다. 대형마트 점포수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4배가량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4배 넘게 증가하였다. 2000년 초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1개당 적정 상권 인구를 15~20만 명으로 추산했을 때 우리나라 대형마트 적정 점포수를 250~300개로 판단하였고, 2003,4년 이후에는 중복출점지역을 중심으로 유통기업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실제 2003년 대형마트 점포수는 257개로 불어났고, 매년 30% 이상 증가하던 매출액은 그 증가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 언론에서도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했다며 ‘제 살 깎기’식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6년 말 이 되자 대형마트 점포수는 329개로 늘어나 적정 점포수의 최대치인 300개를 초과해 과포화 상태에 다다른다.

이러한 과포화 상태에 이르러 과당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대형 유통점들은 한편으로는 본격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 이하 SSM) 출점 경쟁에 돌입하기 시작하였고, 영업시간도 점점 늘려 과거 1주일에 한번 있던 휴업일이 없어지고 야간영업시간도 점점 늘어났다. 2008-2010년 사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논의는 주로 전자의 무분별한 기

업형 슈퍼마켓의 동네상권 침탈문제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과다경쟁으로 인한 심야영업, 공휴일 영업 등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야시간까지의 장시간 영업, 공휴일까지 휴식 없는 영업을 대형유통점에 근무하는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을 크게 해치고 있어 노동법적 관점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대형유통점에 승용차들이 출입하여 교통혼잡과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대형 유통점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에너지 측면에서도 과당경쟁이 없다면 휴점해야 할 심야시간이나 공휴일까지 영업을 함으로써 많은 전력에너지 낭비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가의 대형 유통업체들처럼 자율적으로 야간영업시간을 줄이고 공휴일 영업을 자제할 것이 요청되지만, 대형 유통업체간 눈치보기식 과당경쟁으로 인해 특정 업체가 영업을 연장하면 따라서 모든 업체의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등 더 이상 자율적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도 입법적으로 대형 유통점들의 영업시간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에는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규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하고 있다.

(2)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특유하게 나타나는 휴식없는 장시간노동

유통산업 서비스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영위할 권리가 대형마트,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 등의 출혈 과당경쟁으로 인한 장시간, 휴일없는 영업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장시간 근로의 문제는 일반 근로자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여성이 다수 근로하는 대규모점포 등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유통산업 근로자는 물건을 끊임없이 판매하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따로 없고 매장 이미지를 위해 매장내에서는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4시간마다 30분동안 휴게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현재 유통업의 주 5일제 시행비율이 29.9%(서비스 평균 40.7%)에 불과한 실정에서 영업시간 연장은 과다 노동 유발하고 있다. 백화점 판매직의 경우 장시간 서서 일하는 관계로 어깨와 허리·목 등의 근골격계 질환(22~35%)이나 하지정맥류 증상(5년 이상 근무자 41.1%)과 같은 업무상질병과 그 외 자궁질환, 방광염 등 건강 이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3) 대형 유통점 주변주민의 생활환경권 침해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대형유통점에 승용차들이 출입하여 교통혼잡과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대형 유통점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서구유럽이나 미국의 대형 유통점들은 주거지

역에서 떨어진 도시외곽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주거지역에 대형 유통점이 출점하려는 경우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출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의 월마트도 현재 뉴욕시내에는 출점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시카고에 처음으로 매장을 오픈할 정도로 대도시 주거지나 도심지역에서는 교통과 소음을 많이 유발하여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게 되는 영업을 특성상 주거지역이나 도심지역 진출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대형유통점의 주거지역이나 도심지역으로의 진출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심이나 주거지역에 진출한 대형유통점들이 많고 이에 따라 주거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유발하여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산지역에서 주민들이 대형 유통점 진출에 반대하는 주민운동이 전개된 경우가 있었다. 서구유럽국가들이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정책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점의 도심이나 주거지역 진출을 규제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한국은 대형유통점의 도심지역이나 주거지역 출점을 규제하지 않은 결과 상대적으로 대형 유통점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큰 상황이 되었다. 일본이 이러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측면에서 야간영업 등을 규제하는 입법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에 근접한 대부분의 마트가 심야영업을 함에 따라 야간소음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에 불편을 끼치고 있음. 지역에 따라 소음공해와 빛공해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체증과 위험한 환경을 유발하면서도 제대로 된 교통체증 해소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태도이다. 이에 법으로 주변 주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4) 일본 원전사태와 에너지 과소비의 위험성

일본의 원전사태에서 알수 있듯이 원자력 발전은 위험을 동반함에도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가적 에너지 부족현상은 무리한 원자력 개발을 계속 강행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야간의 상가용 전기료가 가정용보다 5분의 1 이상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형마트와 할인점이 야간에 이용객이 많지 않음에도 불을 켜놓고 서로 과당경쟁을 하고 있어 국가에너지 위기를 가속화하고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대형 소매점포의 심야 전기 낭비만 절약해도 국내 전기 사용량의 상당량을 절약하여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바탕을 이룰 수 있을 것임. 대형 유통점의 심야영업을 제한해야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5) 중소기업의 생존권 보호

대형유통점의 야간영업시간과 공휴일 영업을 규제하면 야간영업시간과 공휴일 시간대에 중소기업의 틈새 영업시장이 확보되어 중소기업의 생존권 보호에 도움을 주게 된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사에 따

르면 대형 유통점의 심야영업시간 규제는 중소기업의 영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휴일 영업을 규제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시장확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생존권 보호는 헌법에서 천명되어 있는 국가의 경제운용의 정책목표이니 만큼 이러한 중소기업 생존권 보호측면에서도 대형 유통점의 공휴일 영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대규모 유통점의 영업시간 규제에 관한 입법논의

(1) 2008년부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2010. 11. 24. 정부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논의에서 대규모 유통점포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법개정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4개 법안이 제출되어 심의하였으나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인해 영업시간규제 법개정안은 모두 폐기되고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으로 일정한 거리안의 전통상가 등 보전구역이라는 zone안에 대규모 유통점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만이 입법화되었다.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반대논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¹⁾

(2) 2008-2010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정에서 제출되었던 영업시간규제에 관한 법개정 내용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월 2일 이상 4일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수와 주중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종료 시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를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기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월 3일 이상의 의무휴업일수를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위반시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안은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1) 2010년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영업시간에 영업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월 3일 이상 4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의무휴업일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한 자에게는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내용이었다.

(3) 정부의 대형유통점 영업시간 규제에 관한 의견

외교통상부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수 지정 등은 국내규제 사항으로 그 자체로 협정상 우리나라 양허에 위배되지 않으나, 역시 국내규제 관련 GATS 6.1조 “합리적,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지식경제부는 대규모점포 및 그 직영점에 대하여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한 국내규제로 국내·외법상 문제가 많고, 제한 목적이 근로자 및 소비자 보호, 인근 주민의 권익 보호 등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편의점 등 다른 업태와의 형평성 문제로 위헌 소지가 있고, 모든 종합소매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소비와 고용의 위축 등 경제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우선 심야 영업의 자율적 제한을 유도하되, 자율제한이 어려운 경우 에너지 절약 등 다른 법률(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별도 강구하겠다는 것이었다.

(4)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의견

영업시간 제한 문제와 관련 국제통상법 전문가들은 WTO GATS 규범내에서 허용된다고 보며, 이를 영업서비스 총량제한으로 GATS 제16조의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국내규범과 관련 영업시간 제한 문제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대의견이 상존할 수 밖에 없는 문제로서 입법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의 운영도 GATS 제6조에서 말하는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의 기준은 충족하여야 하고, 현행 다른 법률인, 청소년게임영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점객영업자(「식품위생법」), 공중위생영업(「공중위생관리법」), 수상레저산업(「수상레저안전법」), 최근의 학원영업시간제한조례(교육자치원칙에 근거) 등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항상 위헌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5) 대규모 유통점을 위한 입법논의 지원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의 의견

WTO GATS 제16조 마켓엑세스 제한사항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도 있고, 그런 것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합리적인 국내규제로 보는 상반된 견해가 있는바, WTO나 국제적으로 확립된 케이스는 없지만, 마켓엑세스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고, 예컨대, 다른 일반점포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대형 점포에 대하여 피크타임인 오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못한다는 식으로 차별을 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가 아니라 근로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일 규제를 한다면 동일 업체에 동일한 제한이 들어가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하면 지자체별로 편의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었다.

(6) 국제법 교수들의 전문의견

경희대 최승한 교수는 휴일일수나 영업종료시간의 제한은 서비스영업활동의 총수나 서비스의 총 산출량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나, 미국 도박사건에서 서비스 총 산출량이라는 개념은 최대한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무휴일일수나 영업종료시간의 제한은 총수 또는 총산출량의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WTO협정에 부합되고, 대안 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영업시간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의 신설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서강대 왕상한 교수의 의견은 영업시간 제한이 양적규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그 목적이 예컨대 근로자휴식권이라든가 가정생활이라든가 기타 공익의 목적에 의한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이미 이와 같은 제한을 가하는 나라도 있다는 것이었다.

성극제 경희대 교수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서비스의 총량을 제한함으로 GATS 제16조제2항C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고, 설사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규제의 도입에 대한 합목적성이 없으면 위반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7) 기타 다른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의견

법률의견을 제출한 한 법무법인은 다른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입법의 미비라는 점을 지적을 하였고, 송실대 강경근 교수는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종목 결정권과 영업행위 등을 통한 기업의 자유의 제한이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비례성 원칙과 관련하여 검토 필요가 있고,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대규모 점포등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소비자의 기본권과의 상충문제도 검토해야 하고, 기본권 제한의 근거인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의 상당한 부분이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조례에 의하도록 한 부분은 법률에서 상세한 내용을 정하지 않을 경우 위헌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3. 외국입법례

(1) 독일

독일은 1956년부터 유통업체 종업원(특히 여자)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도소매업종과 간이매점에 대하여 공통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상점영업시간규제법을 시행하였다. 법안의 내용은 모든 상점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8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6시까지 개점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폐점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첫 토요일에 대해서만 오후 18시까지(긴 토요일)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크리스마스 이전 4주 동안은 매주 토요일에 1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89.10.부터는 매주 목요일에 대해서는 오후 20시 30분까지 영업을 연장하였는데, 이에 따라 모든 민간 및 공공 서비스업(소매업, 은행, 보험, 의사, 변호사 사무실, 여행사, 여객운수업, 비디오 가게 등)과 연방정부의 서비스업(노동사무소, 우체국, 여행센터, 철도 등)에게 목요일에는 20시30분까지 근무하도록 권고(녹색목요일 예외)하고 있다. 전체 주당 영업 총시간도 규제하고 있는데, 긴 토요일이 있는 동절기에는 66.5시간, 하절기에는 68.5시간으로 총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목요일 연장영업 시행으로 총영업시간을 맞추려면 다른 영업일의 폐점시간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형 유통점들이 오전 7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어 다른 요일의 영업일의 폐점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폐점시에 점포내에 있는 고객은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고객에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뿐 아니라, 물건을 조사 및 검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폐점시 물건을 선택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가격을 지불했는지 등에 관계없이 점포내에 있는 고객은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결국, 고객이 대단히 많이 밀릴 경우 대형 유통점들은 마지막 고객에게까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 유통근로자들의 휴식권,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종업원은 정상근로시간을 30분 초과하는 선까지만 근무하고, 꼭 필요한 청소를 할 경우에도 정상근로시간을 30분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할 수는 없다.

위 상점영업시간규제법은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1일 최대 8시간의 일반 근로시간 규정을 그대로 적용되며 청소년보호법과의 관계에서도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8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약국, 신문판매대, 주유소, 역, 공항, 선착장, 이미용업, 특정 생필품(우유, 빵 등), 휴양지, 박람회지역 등에 대하여는 상점영업시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연방정부법으로 시행되었으나, 지금은 각 주 차원의 규제로 전환되어 현재는 14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2) 영국

영국에서는 Sunday Trading Act 1994」 법령에 따라 매장면적 280㎡ 이상의 소매점에 대하여는 일요일의 영업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일요일에 영업을 할 경우에도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사이의 6시간만 일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Christmas Day (Trading) Act 2004」 법령에 따라 매장면적 280㎡ 이상의 소매점의 성탄절 영업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00 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3) 일본

영업시간은 시장 및 마케팅 상황에 따라 자율로 결정하지만, 소음방지법에 의해 야간소음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이 가능하다. 그리고, 2000년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을 제정하여 1,000㎡ 초과인 대규모 점포는 설립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소음·교통혼잡 등의 생활환경 문제를 야기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4) 프랑스

근로관련법령을 통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주중의 영업은 22:00까지 제한하고, 식료품영업은 13시간, 비식료품 영업은 11시간 이내로 총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근로관련법령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대형마트 근로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업장의 근로자가 일요일에는 쉬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5) 이탈리아

D.L.(Decree Legislative)법에서 노동자간 노동시간 불균형해소와 고객안전 확보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되고,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하절기 23시)까지의 영업만 허용하고 있다.

(6) 이상과 같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국가는 유통업체 종업원(특히 여자)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상점에 공통으로 의무휴업일수를 준수토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요일과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평일에는 야간영업을 오후 8시나 10시 이전에 폐점하도록 규제하되 토요일에는 야간영업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오후 4시나 오후 6시 이전에 폐점하도록 하는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시간 규제와 함께 미국 워싱턴 등은 1차 식품(대형마트 매출의 20~25%)을 중심으로 식품과 비과세 상품의 매장면적비중을 15% 미만으로 규제하고 독일은 도심성 상품과 비도심성 상품으로 구분 취급할 수 있도록 영업품목을 규제하고 있다.

4. 대규모 유통점 영업시간 규제에 관한 반대논리에 대한 비판²⁾

(1) 정부 일각에서는 국내규제가 서비스 총수 또는 총산출량 규제에 관한 GATS 제16,17조 등의 개별 조항에 위반되면 바로 GATS 위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GATS 제6조에 의하여 그러한 국내규제가 GATS 제6조에 의하여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을 상실한 것이냐의 검토에 의하여 비로서 GATS 위반여부가 판정되는 것이다.

GATS의 규범체계를 보면 국내규제가 제16조, 제17조 등 개별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하여 바로 위반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규제에 관한 일반원칙 조항인 GATS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GATS 위반 판단의 일반기준인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규제인지를 다시 검토하여 GATS 제6조의 위 일반판단기준에 저촉될 때 비로서 GATS가 되는 것이다. US-Gambling 사건에서도 미국의 3개의 연방법과 8개의 주법에서 도박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규제가 타국의 도박 서비스공급지로부터 들어오는 도박서비스를 전면금지한 조치로 일응 GATS 제16조 (a), (c) 규정에 의한 서비스 공급지수의 제한, 총산출량의 제한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것으로 바로 GATS 위반으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2단계로 그러한 국내규제가 GATS 제14조에서 예외적으로 국내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반규정인 “공중도덕의 보호”나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한 정당한 규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도박 및 내기 서비스의 공급제한이 공중도덕의 보호나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 하여 WTO 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마치, 우리 헌법재판에서 규제 조치가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을 일응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그 규제, 즉 기본권 제한 내지 침해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본권 제한의 규제조치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판단방식이다. 따라서, 개설허가제, 영업품목과 영업시간 규제와 같은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조치가 GATS 제16조, 제17조 등의 개별조항과 저촉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바로 GATS 위반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규제조치가 GATS 제6조의 국내규제의 WTO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인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을 상실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개설허가제, 영업품목과 영업시간 규제가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 비로서 GATS 위반이 인정되게 된다. 그리고, 위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이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

2) 아래 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009.9. 국회 지식경제위에 제출한 법률의견서인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발췌한 것이다.

재판에서의 헌법 제37조에 의한 기본권제한(규제)의 목적의 정당성, 헌법 제10조의 평등성 심사(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2)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은 국내의 대규모점포나 외국의 대규모점포의 관계에서 보면, 국내 외의 대규모 점포가 규제를 받는데 있어 동일한 목적과 방식의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차별없이 규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의 ‘대규모점포’와 국내의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보면, ‘대규모점포’와 중소기업이라는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지위가 규제의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라는 기업의 국적이 규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GATS 제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총 수 또는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은 ‘최대한도에 대한 제한’(maximum limitations)을 의미하기 때문에(미국-도박서비스사건), 의무휴일일수 및 영업종료시간의 제한은 “총 수 또는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의무휴일일수 및 영업종료시간의 제한은 GATS 제6조상의 국내규제에 해당하며, 대규모점포와 재래시장/중소유통업체는 동종 서비스공급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점포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내국민대우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각국도 노동자간 노동시간 불균형 해소, 고객안전확보, 종업원 보호등을 위한 목적에서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Sunday Trading Act(1994년)에 의해 대형점포(점포 연면적 280㎡ 이상)는 지역 관계기간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는 일요일에 영업할 수 없으며 일요일 영업시간은 총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영업시간 제한 위반시는 5천 파운드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이탈리아의 경우도 D.L. 법은 대규모 점포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주중에는 09-22시(하절기 23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는 노동법에 의거 영업시간을 규정하는데 주중에는 22시까지 영업을 가능하나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영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영업시간의 규제는 그 정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내외기업의 구분없이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GATS 위반의 여지가 없다. 프랑스는 유통산업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라는 노동법적 시각에서 노동법에 의해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고(주중 22시까지 영업 가능,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금지), 일본은 유통산업이 유발하는 교통, 소음 등 생활환경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소음방지법에 의해 야간소음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품목 제한명령 등의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GATS 제6조상의 국내규제에 해당하므로, 영업품목 제한명령 등 대규모점포점에 대한 상기 규제조치가 합리적, 객관적, 공평하고, 범규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가 모든 대규모점포점을 대상으로 국내외서비스공급자에 대해 차별없이 합리적,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시행된다면, 영업품목 제한명령 등이 GATS 규정에의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3) 「WTO 유통업 개방의 반성과 대안」(왕상한 저)

(3)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이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영업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그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대적 기본권입니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이나 중소기업의 보호는 헌법 제123조에서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정책이어서 이러한 헌법상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권 제한은 그 규제의 정당성인 인정된다.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는 그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원리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개정안의 규제와 같은 방식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헌법 제37조의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헌법 제123조 제2항의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이나 제3항의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목적을 위해서 개정안의 규제와 같은 방식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⁴⁾ 더욱이, 현행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면서,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광범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⁵⁾ 그와 같은 현행헌법의 경제질서에 성격을 고려할 때, 헌법상의 경제원칙 혹은 경제정책 중 하나인 지역경제의 육성(헌법 제123조 제2항), 중소기업의 보호·육성(헌법 제123조 제3항)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유재산제의 원칙 및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그 구체화로서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및 제23조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는 공공질서,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까닭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의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며, 그 장소,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한 규제가 가능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기본권 제한의 방법과 그 정도의 문제에 있어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행사의 자유(영업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욱 폭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판시하고 있다.⁶⁾

(4) 편의점 등 다른 업태와 비교하여 대규모점포만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편의점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전후로 대규모 점포와는 그 시

4) 헌재 1999.7.22. 선고 98헌가5, 헌재 1996.10.31. 선고 93헌바14, 헌재 1998.11.26. 선고 97헌바31

5) 헌재 2001.6.28. 선고 2001헌마132

6) 대법원 1993.10.26. 선고 93초104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30조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동일 취지의 헌재 2001.6.28. 선고 2001헌마132 판결

장점유율이나 보호대상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취급하는 영업품목 등도 아직은 대규모 점포와 비교하여 광범위하지 않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개설 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을 한다 하여 헌법의 평등권 심사기준인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조치라 할 수는 없다.

정부는 개정안의 규제가 소매시장에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 등 다른 업태와 비교하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특정업태만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위반 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11조에서 명문으로 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성별, 인종, 국적 등에 관한 평등성 침해심사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관한 평등권 침해의 심사방법을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방법을 후자에 대하여는 완화된 심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차별의 정도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정도가 아니라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직업선택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와 관련한 차별은 헌법이 명문으로 제시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평등권 심사에서는 완화된 심사기준, 즉 차별기준 내지 방법의 합리성 여부가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⁷⁾

대규모점포와 비교되는 업태인 편의점의 경우 아직은 중소기업상인의 사업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3% 전후로 대규모 유통점포와는 그 시장점유율이나 보호대상 중소기업상인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상태이고 취급하는 품목도 아직은 대규모 유통점포와 비교하여 광범위하지 않다. 따라서 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규제와 같은 입법을 취하면서 편의점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입법정책상 재량의 문제일 뿐이고 장래에 편의점의 경우도 그 시장영향력이 현저히 증대하고 다루는 품목 등이 늘어나 보호대상 중소기업상인의 사업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 때 입법적으로 편의점 업태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차별적 입법대응을 두고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조치라 할 수는 없다.

(5)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중소기업의 보호받을 권리가 충돌할 때 두 기본권의 합리적 조화를 꾀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표방하고 있는 기본권 충돌의 해결원리라는 점을 볼 때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개설영향평가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크지 않을 때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영업시간이나 영업품목의 일부를 규제하는 것을 이러한 합리적 조화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7) 헌재 2001.6.28. 2001헌마132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과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말한다. 한편 그와 같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금지, 공정거래의 보장, 유통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상권 및 유통경로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더욱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와 같은 이유로 개정안의 규제가 곧바로 헌법상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헌법 제123조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보호받을 권리와 소비자들의 일반적 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와 같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해법으로는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형량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 규범조화적 해석) 등을 들 수 있는데, 충돌하는 기본권이 성격과 태양에 따라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 종합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에 절대적 우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두 기본권이 그 정도가 제한되더라도 모두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조화적 해석의 원리가 기본권 충돌의 일반적인 해결원리이다.⁸⁾ 여기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파생권리인 소비자의 일반적 선택의 자유도 그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고 헌법 제123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영업권과 비교하여 우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두 기본권의 합리적 조화원칙에 의하여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기업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⁹⁾

5. 대규모 유통점의 영업시간규제 특별법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아니라 영업시간규제 특별법 제정인 이유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IMF 이전에는 백화점의 경우 매주 월요일등 주1회 휴무제를 시행했으며, 대형마트가 밤샘영업을 하게 된 것도 최근의 일임. 이와 같이 대형소매점포들의 과도한 야간, 휴일 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경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아닌 특별법인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인데 이 법에 유통산업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사항만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고, 환경보호와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사항도 같이 규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환경관련법제에 포함시키고 근로기준법에 또 따로 유통산업 근로 부

8) 헌재 1991.9.16. 선고 89헌마

9) 헌재 1999.7.22. 선고 98헌가5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로 인하여 부득이 다소간의 소비자선택권의 제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분을 나눠 개정시키게 되면 법의 수범자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업주들이 자신이 지켜야 할 법 사항을 찾아 보기 힘들게 되는바, 이러한 것은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 기본적 태도에 맞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아예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008년 2010년 사이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제출된 정부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규제가 주된 목적이라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노동관계법에서 영업시간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상점영업시간규제법의 주된 목적은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휴식권 보호와 가정생활 보호 등이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야간소음, 교통혼잡 등의 생활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2) 법의 적용대상과 시행시기

법의 적용대상 업종은 슈퍼마켓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할인점 및 SSM으로 해야 한다. 법의 적용대상 규모는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사업장까지 포함하거나 지나친 영세 상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수범대상자로 하되, 유통산업이 특별법의 준수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산업발전에 지해가 되지 않도록 수범자를 법 시행 직후에는 1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이는 대형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5년뒤에는 50명 이상 고용업자, 10년 뒤에는 10인 이상 고용업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일 바람직하다.

(3) 유통산업 서비스 근로자 보호를 위해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야간근로의 제한 -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 지역에 위임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은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사이에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특성·주민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환경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산권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음. 이러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가는 영국법도 유사한 구조이다. 환경노동부 장관이 허가시에 주중에 비하여 주말의 영업시간을 더 단시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백화점과 할인점 등 업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필요에 따라 단일 업체 내 일부 매장 또는 일부 품목에 대해 영업시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조화로운 것이다. 그리고 지역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환경노동부 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도록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휴일근로의 제한 -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 지역에 위임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은 공휴일 중 월4회 이상의 범위에서 휴업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특성·주민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환경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휴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6시간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재산권과의 조화를 역시 꾀할 수 있다.

그리고 역시 환경노동부 장관이 허가에 백화점과 할인점 등 업태에 따라 달리 허가할 수 있으며, 주민의 필요에 따라 단일 업체 내 일부 매장 또는 일부 품목에 대해 공휴일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노동부 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도록 허가권을 위임하게 하면 될 것이다.

다. 휴게시간

대규모점포 등의 사용자는 유통산업 근로자에게 식사시간 이외에도 유통산업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전용휴게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줄 필요가 있음. 서비스 노동자들은 쉽지 않는 노동을 하고, 업장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특성상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매장에 정수기조차 없는 등 근로환경이 심각한 경우가 많다.

라. 휴게시설 등

대규모점포 등의 사용자는 유통산업 근로자 전용휴게시설을 업체 내에 업체 규모에 따라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고 의자, 급수시설 등 휴게와 수유시설, 탁아시설 등 모성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도록 하고 휴게시설의 면적과 필수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4)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포함할 내용

가. 환경보호 등 지침 공표

환경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입지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그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나. 신고의무와 주민 설명회

그리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8조의 환경노동부령이 정하는 공표 사항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대규모점포 등이 속하는 시도군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열도록 하여야 함. 이는 일본법례도 동일하다.

다. 의견청취와 시정명령

설명회 후 대규모소매점포 등의 소재지 주민은 시도군에 신고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주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시도군의 장은 그 내용을 참작하여 신고자에게 시정을 명령하도록 한다면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라.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중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교통유발에 대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에 따른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외에도 대규모 점포 등에 해당하고 교통유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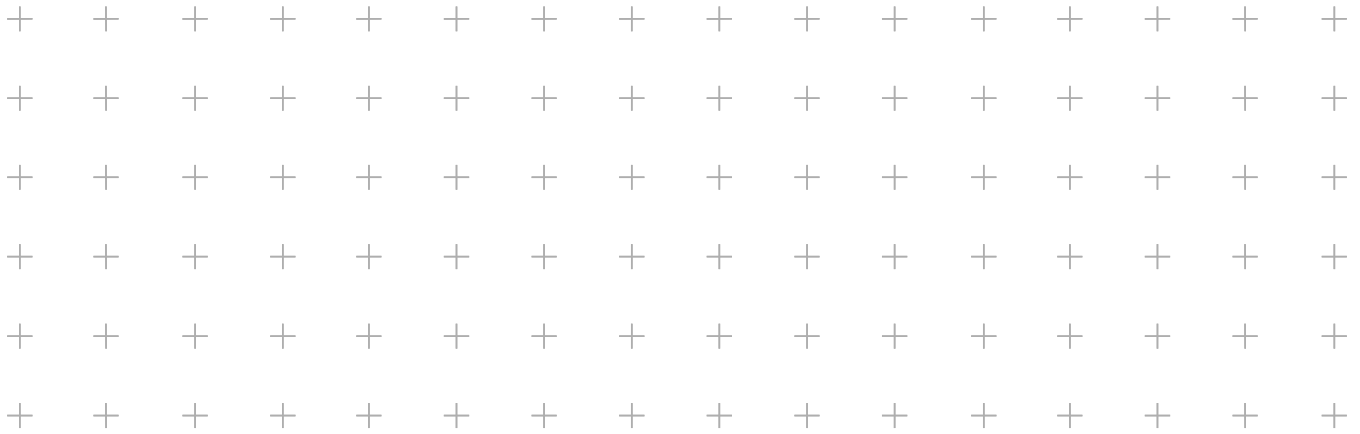
(5) 지역 주민과 노동조합, 환경단체 및 유통상인의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와 벌칙

가. 심의위원회의 필요성

법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 소속으로 대규모점포 등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대해 심의시 해당 사군 또는 자치구내의 지역주민, 지역내 유통산업 근로자 노동조합 임원, 지역내 환경단체 임원,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정한다면 지역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벌칙의 필요성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이 법의 위반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부과를 정해야 한다.



발제 2 | 휴일에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무제 법제화를 통한 유통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중소기업보호 등에 대한 종합 검토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무제 법제화를 통한 유통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중소기업보호 등에 대한 종합 검토

이성중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1. 한국의 유통산업 개방과 주요 경과

- 1996년 1월 1일 유통산업 전면 개방(93년 12월 UR 타결이 개방의 근거)
 - * UR[Uruguay Round]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농산물, 석유류 교역과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 15개 의제가 협상되고 합의(주로 관세철폐 또는 무역개방 조치였음)되었다
- 1998년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제정(외국인의 부동산소유 허용)되면서 국내유통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은 완전히 사라짐
- 한국 유통산업은 유통시장 개방 이후 새로운 유통업태의 출현과 유통구조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측면으로 분석하여 긍정적 평가가 우세
- 현재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2. 유통업종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 유통산업종사자 추이(2007년 기준)

고용비중 : 총고용의 15.7%로 2위(제조업 17.6% 1위/ 음식,숙박업 8.7% 3위)

▷ 업체 규모별 영업시간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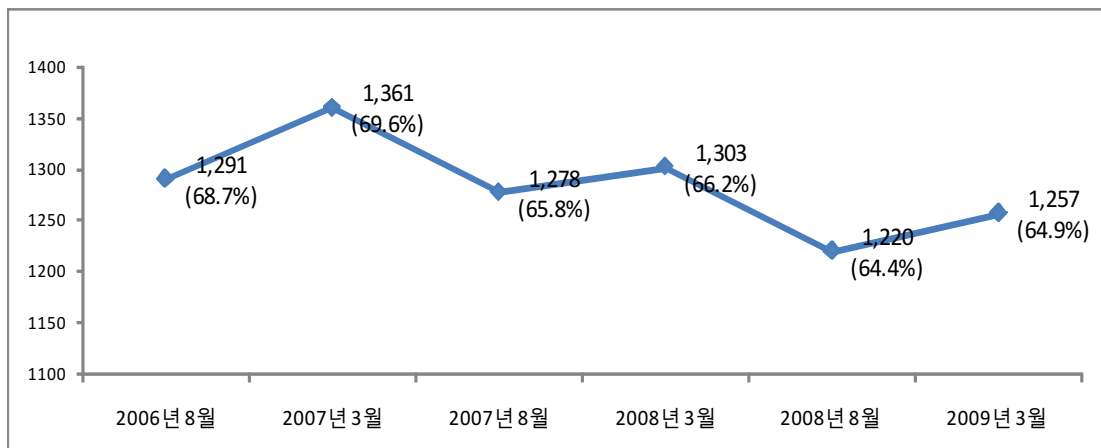
분류	영업시간
백화점	10:30~20:00/ 상시적인 연장영업 23시까지 야간영업/ 월 1회 휴점(지켜지지 않음)
할인점	10:00~24:00/ 24시간 영업/ 년중 무휴 영업
면세점	10:00~21:00 또는 22:00/ 년중 무휴영업
SSM	09:00~24:00 또는 24시간 영업/ 년중 무휴영업
편의점	24시간 영업/ 년중 무휴 영업
기타(양판점, 카테고리 킬러 등)	10:00~22:00/ 년중 무휴영업

* 양판점 : 대량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소매점(하이마트 등)

* 카테고리 킬러 : 카테고리킬러란 종합소매점에서 취급하는 품목가운데 한계열을 선택, 상품폭을 넓히고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문유통업체. 또는 여러가지 물건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팔지 않고 한가지 종목만 취급하는 유통업체를 말한다.(ABC마트 등)

- 유통자본은 점차적으로 직접고용 인력을 줄이는 대신 간접고용 및 협력(입점)업체 비율 높임. 특히 신규 매장의 인력운영은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으로 운영, 더불어 기존의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성과급형 임금체제로 전환. 게다가 기존 인력을 사업부 외주용역분사 등의 방법으로 유연화 전략 추구
- 유통업 노동자 장시간 노동에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적용율은 50% 수준에 불과함. 입점업체 직원들의 경우 휴일 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유통업 : 정규직 180만원 ↔ 비정규직 102만원[여성 비정규 93만원], 주5일제 시행 비율 19.4% ↔ 비정규 13.5% ≠ 전체 서비스평균 40.7%). 이런 현실에서 최근 백화점들의 나이트 파티 행사(소수 우수 고객을 위한)로 연장영업 일상화. 이런 이유로 입점 판매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5시간 내외. 노동자의 건강권 악화 상황 → 판매직 근골격계 비율 22~35% 수준(5년 이상 근무자 하지정맥류 비율 41.1%).

▷ 유통업(도소매업) 비정규직 추이 : 2006.8 - 2009.3(단위: 천명)



- 여성화(60-80%) 및 비정규직화(65% 고착화) →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종합소매업은 여성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태임. 하지만 이들의 이해를 대변할 노동자 대표조직은 거의 없는 상황(노조 조직률 4.4%[비정규 1.7%] 수준, 전체 조직률의 1/3)이기에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받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Voice → Exit)
- 유통업 중 백화점과 할인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보면, 원청 정규직인 사무관리직(평균 임금 189만원)에 비해 간접고용 노동자 및 하도급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임금 불평등도가 높은 편. 특히 원하청간 임금불평등도를 보면, 사내하청 종사자 > 협력업체 종사자 > 원청 종사자 순으로 임금 불평등도가 높음. 예를 들면 원청 사무관리직의 임금을 '100'으로 할 경우 사내하청 종사자인 농수산축산물직은 '45.3', 계산직은 '60.2', 고객센터직 '66.5'인데, 협력업체 종사자인 기타판매판촉직 '55.2', 식품 판매직 '62.1', 화장품 판매직 '84.9'.
- 특히 원청(유통기업)의 영업방침이 결정되면 하청(협력업체노동자, 또는 파견노동자)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에 맞추어 일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이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권한이 없는 상태로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된 상태임

■ 서비스노동자 삶의 질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0년 10~11월
- 조사대상 : 연맹 소속 71개 노조의 3,096명

[조사내용]

직장 만족도/ 노동조건 변화/ 노동시간 및 휴가, 휴게/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우울증/ 탈진/ 질병 및 사고에 관한 설문

* 노동시간 만족도

업종	노동시간				평균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유통외식	60 (3.7)	441 (27.3)	688 (42.5)	429 (26.5)	2.92
레저	210 (16.4)	674 (52.7)	303 (23.7)	92 (7.2)	2.22
특수고용	1 (1.3)	17 (21.3)	33 (41.3)	29 (36.3)	3.12
전체	271 (9.1)	1132 (38.0)	1024 (34.4)	550 (18.5)	2.62

* 노동강도 만족도

업종	노동강도				평균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유통외식	43 (2.7)	478 (29.8)	705 (44.0)	377 (23.5)	2.88
레저	65 (5.1)	476 (37.2)	489 (38.2)	249 (19.5)	2.72
특수고용	0	23 (28.8)	27 (33.8)	30 (37.5)	3.09
전체	108 (3.6)	977 (33.0)	1221 (41.2)	656 (22.1)	2.82

* 근무형태 만족도

업종	근무형태				평균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유통외식	85 (5.3)	638 (39.7)	651 (40.5)	232 (14.4)	2.64
레저	74 (5.8)	508 (39.7)	536 (41.9)	161 (12.6)	2.61
특수고용	1 (1.3)	19 (23.8)	31 (38.8)	29 (36.3)	3.10
전체	160 (5.4)	1165 (39.3)	1218 (41.1)	422 (14.2)	2.64

* 근무시간 변화

업종	3년 동안 근무시간 변화					평균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다	약간 증가	매우 증가	
유통외식	54 (3.6)	238 (15.9)	873 (58.4)	249 (16.7)	81 (5.4)	3.04
레저	19 (1.5)	134 (10.8)	775 (62.6)	217 (17.5)	94 (7.6)	3.19
특수고용	2 (2.6)	8 (10.4)	43 (55.8)	11 (14.3)	13 (16.9)	3.32
전체	75 (2.7)	380 (13.5)	1691 (60.2)	477 (17.0)	188 (6.7)	3.11

* 여유시간 변화

업종	3년 동안 여유시간 변화					평균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다	약간 증가	매우 증가	
유통외식	132 (8.6)	213 (13.8)	989 (64.2)	191 (12.4)	16 (1.0)	2.84
레저	143 (11.4)	231 (18.5)	753 (60.2)	104 (8.3)	20 (1.6)	2.70
특수고용	10 (13.2)	12 (15.8)	43 (56.6)	7 (9.2)	4 (5.3)	2.78
전체	285 (9.9)	456 (15.9)	1785 (62.2)	302 (10.5)	40 (1.4)	2.78

* 휴일근무 횟수 변화

업종	3년 동안 휴일근무 횟수 변화					평균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다	약간 증가	매우 증가	
유통외식	57 (3,7)	144 (9,4)	1037 (67,6)	250 (16,3)	46 (3,0)	3,05
레저	38 (3,1)	106 (8,5)	808 (65,0)	231 (18,6)	61 (4,9)	3,14
특수고용	3 (3,9)	11 (14,5)	45 (59,2)	9 (11,8)	8 (10,5)	3,11
전체	98 (3,4)	261 (9,1)	1890 (66,2)	490 (17,2)	115 (4,0)	3,09

* 업무량 변화

업종	3년 동안 업무량 변화					평균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다	약간 증가	매우 증가	
유통외식	11 (0,7)	93 (6,0)	677 (43,9)	580 (36,3)	201 (13,0)	3,55
레저	3 (0,2)	63 (5,0)	517 (41,4)	470 (37,6)	197 (15,8)	3,64
특수고용	0	11 (14,3)	39 (50,6)	16 (20,8)	11 (14,3)	3,35
전체	14 (0,5)	167 (5,8)	1233 (43,0)	1046 (36,5)	409 (14,3)	3,58

* 업무종류 변화

업종	3년 동안 업무종류 변화					평균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다	약간 증가	매우 증가	
유통외식	5 (0,3)	86 (5,6)	581 (37,8)	634 (41,2)	233 (15,1)	3,65
레저	8 (0,6)	61 (4,9)	443 (35,4)	526 (42,0)	213 (17,0)	3,70
특수고용	1 (1,3)	6 (7,9)	37 (48,7)	20 (26,3)	12 (15,8)	3,47
전체	14 (0,5)	153 (5,3)	1061 (37,0)	1180 (41,2)	458 (16,0)	3,67

* 부서 인력 변화

업종	3년 동안 부서 인력 변화					평균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다	약간 증가	매우 증가	
유통외식	178 (11,5)	332 (21,5)	676 (43,7)	327 (21,1)	34 (2,2)	2,81
레저	260 (20,8)	405 (32,4)	413 (33,0)	143 (11,4)	30 (2,4)	2,42
특수고용	2 (2,6)	14 (18,2)	29 (37,7)	25 (32,5)	7 (9,1)	3,27
전체	440 (15,3)	751 (26,1)	1118 (38,9)	495 (17,2)	71 (2,5)	2,65

* 고객 스트레스 변화

업종	3년 동안 고객 스트레스 변화					평균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다	약간 증가	매우 증가	
유통외식	10 (0,6)	68 (4,4)	432 (27,9)	522 (33,7)	519 (33,5)	3,95
레저	21 (1,7)	74 (5,9)	417 (33,4)	451 (36,1)	285 (22,8)	3,73
특수고용	0	2 (2,6)	13 (17,1)	15 (19,7)	46 (60,5)	4,38
전체	31 (1,1)	144 (5,0)	862 (30,0)	988 (34,4)	850 (29,6)	3,86

* 업무공간 의자 제공 및 이용 실태

업종	의자 제공 및 이용				
	의자 없음	회사 눈치	고객 눈치	가끔 앓음	의자 앓음
유통외식	656 (50,5)	175 (13,5)	173 (13,3)	195 (15,0)	100 (7,7)
레저	344 (41,3)	105 (12,6)	53 (6,4)	154 (18,5)	177 (21,2)
특수고용	7 (16,7)	2 (4,8)	1 (2,4)	8 (19,0)	24 (57,1)
전체	1007 (46,3)	282 (13,0)	227 (10,4)	357 (16,4)	301 (13,8)

* 응답자 노동시간 및 휴가 사용 실태

	업종			평균
	유통외식	레저	특수고용	
향후 근무년수(년)	7,81	11,20	8,17	9,25
1일 근무시간(시간)	9,37	8,21	10,00	8,89
월간 10시간 이상 근무일(일)	11,47	3,93	15,39	8,71
주간 노동시간(시간)	47,37	42,41	54,25	45,37
월간 휴일(일)	7,48	7,75	4,32	7,51
월간 토, 일요일 휴일(일)	2,41	2,49	4,15	2,49
년간 휴가일 사용(일)	7,20	9,79	5,90	8,36
사용 휴가/전체 휴가(%)	63,60	59,48	89,57	62,14
년간 생리휴가 사용일(일)	0,69	9,17	-	3,40

* 일가정 양립 가능성 여부

업종	일가정 양립			
	매우 힘들	약간 힘들	별로 안힘들	거의 안힘들
유통외식	380 (23,8)	806 (50,4)	368 (23,0)	45 (2,8)
레저	147 (11,8)	619 (49,5)	423 (33,8)	61 (4,9)
특수고용	14 (17,7)	39 (49,4)	23 (29,1)	3 (3,8)
전체	541 (18,5)	1464 (50,0)	814 (27,8)	109 (3,7)

* 감정노동 노출 수준

항 목	유통외식	레저	특수고용
1. 내 일은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3.40	3.05	3.37
2. 내가 하는 일은 내 기분과 관계없이 항상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	3.57	3.17	3.37
3. 나는 일하면서 무표정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한다.	1.59	1.98	2.00
4. 나는 솔직한 내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	3.24	3.03	3.20
5. 나는 일을 하거나 고객을 대할 때 보여주어야 하는 기분을 실제 내 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99	2.75	2.82
6. 나는 내 뜻대로 고객 응대를 계속할지 결정할 수 있다.	2.24	2.40	2.39
7.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호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3.07	2.92	3.18

* 감정노동을 악화시키는 성적, 물리적 폭력 실태

업종	인격무시		폭언 경험		성희롱		폭행 경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유통외식	525 (33.2)	1058 (66.8)	358 (22.6)	1223 (77.4)	64 (4.1)	1514 (95.9)	35 (2.2)	1558 (97.8)
레저	552 (44.8)	680 (55.2)	520 (42.2)	712 (57.8)	192 (15.6)	1035 (84.4)	91 (7.3)	1151 (92.7)
특수고용	27 (36.0)	48 (64.0)	29 (38.7)	46 (61.3)	2 (2.8)	69 (97.2)	2 (2.7)	72 (97.3)
전체	1104 (38.2)	1786 (61.8)	907 (31.4)	1981 (68.6)	258 (9.0)	2618 (91.0)	128 (4.4)	2781 (95.6)

* '한달 평균' 일하면서 겪었던 인격무시 경험자는 약 40%, 폭언 경험자는 약 30%, 성희롱 경험자는 9%, 폭행경험자는 5%로 나타났다.

* 성희롱, 폭력 등의 가해자 분포

업종	가해자			
	고객	상사	동료	기타
유통외식	354 (60.3)	186 (31.7)	35 (6.0)	12 (2.0)
레저	447 (73.0)	137 (22.4)	18 (2.9)	10 (1.6)
특수고용	25 (80.6)	2 (6.5)	1 (3.2)	3 (9.7)
전체	826 (67.2)	325 (26.4)	54 (4.4)	25 (2.0)

* 응답자의 우울증 수준

	업종			전체
	유통외식	레저	특수고용	
우울 증상 없음	604 (40.6)	574 (49.9)	33 (44.6)	1211 (44.7)
경증 우울 증상	491 (33.0)	267 (23.2)	21 (28.4)	779 (28.7)
중등도 우울 증상	214 (14.4)	187 (16.3)	9 (12.2)	410 (15.1)
고도 우울 증상	178 (12.0)	122 (10.6)	11 (14.9)	311 (11.5)
심리상담 필요	392 (26.4)	309 (26.9)	20 (27.1)	721 (26.6)

3. 연맹의 유통노동자 건강권 쟁취 활동 소개

▷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의자캠페인

노동자는 의자를 통해 일할 미소로
고객을 친절할 (맞) 하겠지요!

사업주는 밥개서 규정하고 있는
의자까지 의무를
이행하면 되고!

정부는 사업주들이 관행법을 조속히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청정장 관리자들을 하명 되고!

고객을 잘시 의자에 앉아 있는 노동자를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행하면 되고!

의자는 존중입니다!

장시간 서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여성노동자들은
다리근육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안되면서
하지정맥류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앉아서 일하는 경우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들은
8배나 높은 하지정맥류 발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서서 일하는 모습은 예의 바르게 보이고,
앉아서 일하는 모습은 무례하게 보이나요?
의사나 변호사가 앉은 상태로 그들의 고객을 맞이하지만,
아무도 그 모습을 보고 불친절하거나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따라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들에게
의자 놓아주는 고객과 사업주 그리고 노동자가
함께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행복 나누기입니다.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의자를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 국회사진전



▷ 1인시위(국회, 백화점 앞)



▷ 상인대회 연대



▷ 토론회



▷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 제한 및 주1회 정기휴점제 시행을 위한 대국민캠페인



▷ ‘영업시간 제한법(가칭)’입법 청원

- 2004년 6월
- 2005년 7월 11일

▷ 영업시간 제한 및 주1회 정기휴점제 시행을 위한 서명운동

- 내용 :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정기 주휴점제 실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 대형유통업체 간접고용노동자 실태조사

- 내용 : 노동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하여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함

▷ 소비자의식 설문조사

- 내용 :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 지하철 벽면 광고

- 지하철 2, 5호선 차량 내 부착/ 약 200개/ 기간은 2009년

“
퇴근시간 11시,
오늘도 딸아이 잠든 얼굴만
보았습니다
”

일주일에 하루는
가족과 함께 늦드고
따뜻한 이불 깔 한 켠 나누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일마루에 파크되는
딸아이 얼굴 마주하여 웃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그저... 평범한 엄마,
평범한 아내이고 싶습니다.

*대형유통매장 영업시간 제한(핵심점 10:30~19:30, 할인점 10:00~22:00)
 주1회 정기휴점제 시행으로
아이와 엄마가 함께 웃는 세상, 시민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온
520곳의 의지

국회와 지방의회, 관공회까지 520
곳을 넘어 전국 100여 곳의
민간 기업, 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등 520여 곳의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의 힘을!
아이에게 엄마를
물려주세요

국회와 지방의회, 관공회까지 520
곳을 넘어 전국 100여 곳의
민간 기업, 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등 520여 곳의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 서비스 노동인권 상담센터 ▶

서비스업종에서 일하시다가, 권리찾고 싶지 않거나 상담하고 싶으신가요?
서비스노동인권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노동상담에서 문제해결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상담전화 : 전국 24시간 노동인권상담센터, 02-0627-0906, 02-0627-0907, 02-0627-0908, 02-0627-0909, 02-0627-0910
☎ 상담전화 후 서비스센터 02-0627-0906 후 편성 - 상담 02-0627-0906

☎ 전국민 간서비스노동포탈포털 - 각시행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각 시·도별 24시간 서비스노동인권상담센터는 전국민서비스노동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4. 연맹의 2대 요구 및 각 부문별 시행효과

▷ 연맹의 2대 요구

① 영업시간 제한, 규제 또는 적절한 영업시간 도입 (백화점/ 10:30~19:30) (할인점, SSM/ 10:00~22:00) (면세점/ 10:00~20:00)	② 주1회 정기휴점제 시행
---	----------------

▷ 기타 규제 방안

- 개설 허가제 도입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의 신규 출점을 제한
- 영업품목 제한, 거리제한 등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적절한 영업활동 규제

▷ 각 부문별 시행효과

* 당 연맹의 2대(영업시간 제한 및 주1회 정기휴점제 도입) 요구에 대한 시행효과

부문	시행 효과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의 공동 휴식권, 건강권 보장 및 노동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유통기업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효과(탄소가스 배출 감소)와 경비 절감 및 수익 증대
소비자(국민)	휴점 시 시설안전 점검을 통해 방문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
중소영세상인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및 업종 내 양극화 해소
유통산업	재벌유통기업들의 독과점 완화와 유통산업 내의 불균형 등 양극화 해소
사회문화	과소비문화 조절 및 사회구성원 간의 더불어 사는 인식 고양
여성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여건 보장과 심야시간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
국가	균형있는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

(1) 서비스노동자들의 공동휴식권과 건강권보장 등 삶의 질 향상(유통노동자)

- 백화점 협력업체 직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고 있을 정도로 OECD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일해야만 하는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 상태임
- 주1회 정기휴점제 시행은 ILO에서 권고하고 있는 한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공동으로 휴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주5일제의 온전한 시행을 통해서 여가, 레저생활 확대 등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

▷ 죽도록 일만 하는 한국의 노동자들

OECD 통계연보 주요 내용			
구 분	한 국	OECD평균	비 고
1인당 GDP	2만4801달러	3만2664달러	
소비자물가지수	131.4	121.7	2000년=100
고용률	63.9%	66.7%	
연간 근로시간	2316시간	1768시간	
자살률	18.7명	11.88명	10만명당
자동차사고	127건	90건	100만명당
빈곤률	0.15	0.11	200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1996년 가입한 한국의 노동자들은 연간 최장의 노동시간을 보유하고 있고, 2위인 헝가리보다도 무려 년 간 330시간(41일)을 더 일을 하고 있는 상황

▷ 노동자들의 공동휴식권을 권고하고 있는 ILO조약

ILO 조약 106호 '상업 및 사무직의 주휴에 관한 조약'

제6조

2. 주휴기간은 각 사업장의 모든 관계자에 대하여 가능한 한 동시에 부여되어야 한다.
3. 주휴기간은 국가 또는 지역적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휴일로 정해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시켜야 한다.

ILO조약에서는 하나의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같은 날 쉬어야 한다는(공동휴식권) 것과 국공휴일에 가급적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하고 있음

(2)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효과와 기업의 수익 증대(유통기업)

- 유통기업의 특성 상 조명과 냉온방 등 에너지가 과다 소비되는 문제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감이 국가 시책인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휴점 등을 통하여 상당량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음
- 에너지 절감은 곧 기업의 비용 절감을 의미하며 이는 유통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임

▷ 정기 주휴점제를 시행할 경우 전기/수도료 절감 효과(1997년의 예)

1. 97년 12월말 현재 전국백화점 현황(유통저널 98년 1월호 참고)
 - 전국백화점 점포수 125개
2. 각 휴무형태별 매장면적(유통저널 98년 1월호 자료로 계산)
 - 전국 백화점 총 매장면적 1,995,805m²

3. 휴무형태별 각 점포당 1일 평균 전기/수도료

- 주휴점제 점포	4,275,792원
- 월2회 휴무제 점포	2,797,818원
- 월1회 휴무제 점포	1,318,064원
- 무휴점제 점포	2,673,928원

* 산출 근거로는 매장면적 34476m²의 1일 영업에 대한 전기/수도료 6,823,059원(상업연맹자
체조사. 부가세 포함)을 바탕으로 매장면적에 따라 비례 계산

4. 각휴무형태별 1년의 평균영업일수(백화점업체 영업일수 자료)

- 주휴점제 점포	317일(세일기간무휴포함)
- 월2회 휴무제 점포	337일(세일기간무휴포함)
- 월1회 휴무제 점포	345일(세일기간무휴포함)
- 연중무휴 시 영업일수	357일(신정, 추석, 설날 등 8일 제외)

5. 연중 무휴제 전환 시 추가영업일수

- 주휴점제 점포	40일
- 격주휴무제 점포	20일
- 월1회 휴무제 점포	12일

6. 전국의 모든 백화점이 연중무휴제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추가 전기/수도료

- 계산식 : (각 휴무형태별 추가전기수도료 = 각 휴무형태별 추가영업일수 × 각 휴무형태별 점 포수 × 각 휴무형태별 평균면적 점포의 1일 평균전기/수도료)
- 연중 무휴 시 추가전기수도료
= 40일×40개×4,275,792원 + 20일×73개×2,797,818원 + 12일×5개×1,318,064원
= 6,841,267,200원 + 4,140,770,640 + 79,083,840원
= 11,061,121,680원

7. 모든 백화점이 연중무휴에서 주휴제(세일기간도 주휴)를 실시할 경우 절약되는 전기/수도료

- 계산식 : 줄어드는 영업일수 ×(‘각 휴무형태별 전체점포의 1일 전기수도사용료’의 합)
* 1년은 52주이므로 줄어드는 영업일수는 52일
- 절약되는 전기/수도료
= 52×(40×4,275,792 + 73×2,797,818 + 5×1,318,064 + 2,673,928×7)
= 52×(171,031,680 + 207,023,880 + 6,590,320 + 18,717,496)
= 52×400,580,210

= 20,830,170,920원(약 208억)

* 현재의 물가수준으로 환산하면 1,000억 이상으로 평가

(3) 휴점 시 시설안전 점검으로 방문객들의 안전을 보장(소비자, 고객, 국민)

- 현재 대형유통업체들의 년 중 무휴영업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결국 유통매장을 찾는 고객(소비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임(삼풍백화점 붕괴사고)
- 따라서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 제한 및 휴점 등을 통해 확보된 시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방문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
- 한편으로는 연장, 야간영업을 규제함으로써 심야시간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발생률을 대폭 줄일 수 있음

▷ 매장 내 안전사고

2008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사고의 80%가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외에도 유리로 된 자동 출입문에 손가락 등의 끼임 사고나 미끄러운 바닥에서 전도사고 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건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1천여 명 이상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그 후 119 구조대, 경찰, 시, 정부, 국회까지 나서 범국민적인 구호 및 사후처리가 이어졌다. 사망자는 501명, 부상자는 937명, 실종 6명, 피해액은 약 27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백화점 측이 수개월 전부터 건물의 붕괴 조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적절한 점검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 무리하게 영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명백한 인재로 확인됨

(4)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중소영세상인 및 자영업자)

- 재벌 유통기업들의 무분별한 신규 출점과 과당경쟁으로 중소기업상인 및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까지 출점함으로써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
-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정기적인 휴점은 해당 지역의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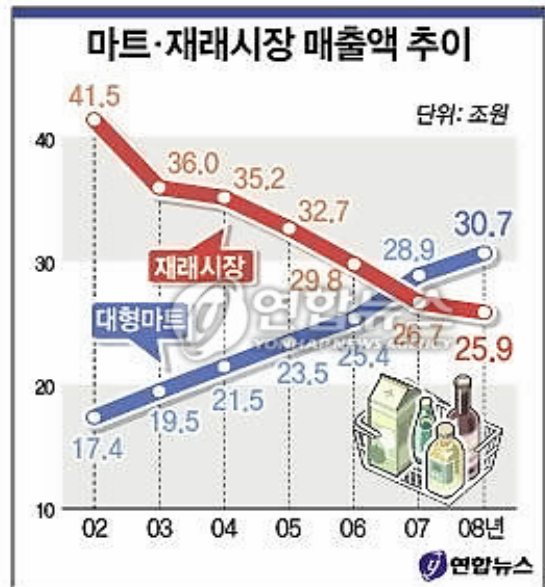
상인들이 독립적인 시간대 또는 특정한 날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음

▷ 비교자료

- 1998년 91개이던 대형마트는 2005년 307개로 330%나 늘어남
- 같은 기간 영세소매점은 70만 6000개에서 62만 6000개로 11.3%가 줄었음
-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2004년 35조 4천억원에서 2006년 30조원으로 감소

(5) 유통업종 내의 불균형 등 양극화 해소(유통산업)

- 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국내의 유통산업은 외국 유통자본의 유입과 재벌기업들의 유통시장 진출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하였으나 유통기업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무제한 출점 시도 등 유통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불균형과 기형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 따라서 재벌유통기업들에 대한 규제(영업시간 제한 및 정기휴점제 시행)를 통해서 국내 유통업종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불균형을 해소하고 산업 내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음



(6) 과소비문화 조절 및 사회구성원 간의 더불어 사는 인식 고양(사회문화)

- 대형유통매장들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과소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과소비욕구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음
- 또한,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매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노력하는 역할을 자의반타의반 하게 됨으로써 사회구성원 간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의식을 고양하는 효과가 있음

▷ 과소비 유발하는 유통매장의 풍경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들은 고객의 심리를 이용하여 구매를 유도하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놓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2층부터 만들어 고객의 동선을 늘어나게 하고 에스컬레이터 왼쪽에 할인매대를 설치하여 값이 싼 제품으로 소비자의 막간의 시간을 이용한 판매를 하고, 시계와 창문을 없애서 쇼핑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 대 별로 음악을 바꿔가며 심리학에 근거하여 음악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합니다. 할인매장에서는 T라인 진열형식을 만들어서 가판대를 S라인의 동선으로 쇼핑을 유도하여 고객들이 최대한 많은 상품을 접하도록 합니다. 계산대 주변에 있는 간편한 상품(껌, 소세지 등)들은 기다리는 짧은 시간동안 또 하나의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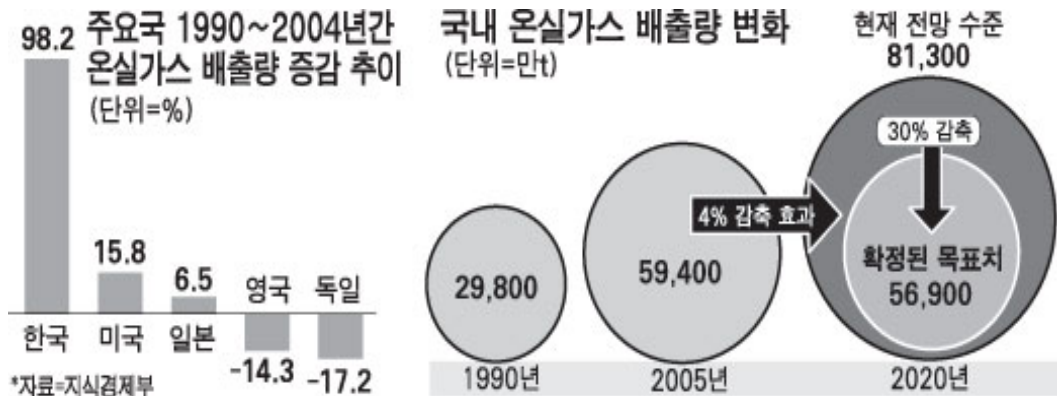
▷ 과소비의 문제점

- ① 가게 파탄(소득보다 초과구매로 인한 가계재정의 어려움 유발)
- ② 사회 불안의 한 요인(일부 '과소소비' 행태는 위화감 조성)
- ③ 국가 경제의 경쟁력 약화
- ④ 자원의 고갈과 각종 오염 물질의 배출을 증대시켜 환경 파괴

(7) 공정하고 균형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정부)

-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중소기업유통업자와 대형유통업체가 상호 공존, 공생하는 문화와 국내 유통산업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음
-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적절히 규제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정책에 부흥할 수 있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하여 기업들의 도덕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음
- 야간활동 증가에 따른 현대인들의 건강상의 문제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및 향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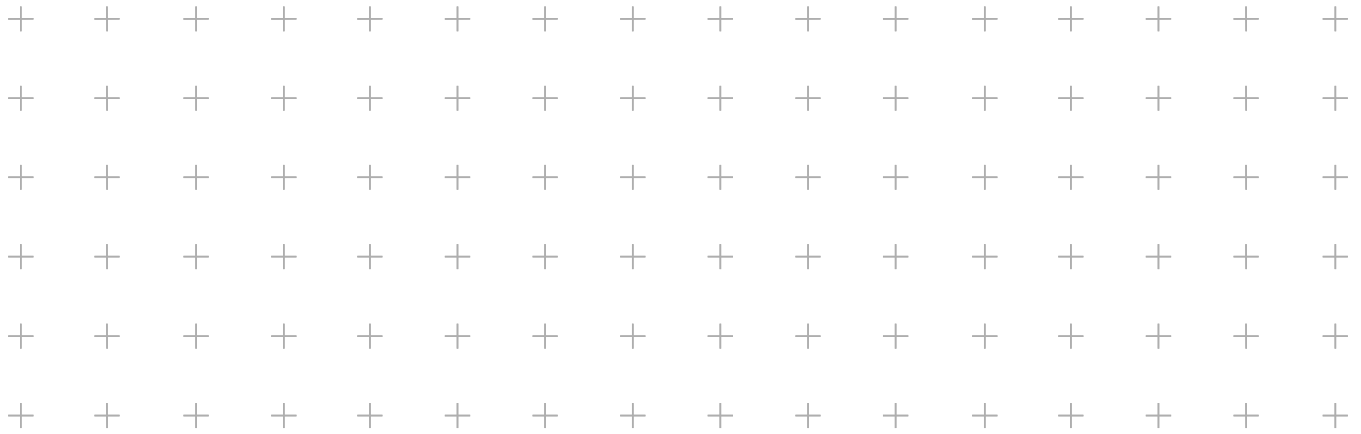


▷ 최근 정부 발표

지난해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 강국 진입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천명했다. 동시에 2005년 기준 2020년에 온실가스 4% 감축이라는 개도국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감축 목표를 결정했다.

5. 특별법 추진의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전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부문을 다루는 특별법은 존재하지만 특정한 산업 또는 업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 추진은 각별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유통업종(판매직종을 중심으로 한)노동자들의 건강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소와 모성보호,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이미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인식되고 있는 분야이므로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재라 판단된다
- 또한, 특별법 추진은 재벌유통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인한 산업 양극화 해소와 과도한 에너지소비를 규제하여 친환경 기업활동을 추동하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쇼핑문화를 선진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비스업종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의 완화와 그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토론 1 | 휴일에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야간노동의 건강영향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야간노동의 건강영향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1. '24시간 속도사회'를 떠받치는 야간노동

한밤중에 별 어려움 없이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할 수 있는 '24시간' 풀가동되는 곳, 바로 한국 사회이다. 경찰서나 병원처럼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많은 대형마트, 영화관, 미용실, 공장, 퀵서비스, 음식점 등이 야간연장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사람들은 "편리하네"라며 언제든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증가와 좀 더 싼 제품의 구입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야간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자리 잡고 있다.

야간교대노동은 첫째, 공공 서비스 사업으로서 전기, 가스, 운수, 수도, 통신, 병원 등 공익적 사업을 중지할 수 없는 경우, 둘째, 생산기술이나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철강, 석유화학 등 생산과정이 연속되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셋째, 경영효율성을 위해 생산설비 완전가동이나 기업 간 경쟁 등의 사유로 조업 및 영업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에 실시된다. 이 중 교대제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첫째와 두 번째이다. 그러나 셋째의 경우 오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일 뿐, 그 자체로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야간노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바로 세 번째에 해당한다.

따라서 야간교대노동은 개인적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밤에 불을 훤히 밝혀 수면을 줄이고 장시간 일을 하게 만드는 사회구조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닭의 산란율을 높이기 위해 닭장 안을 24시간 내내 훤히 밝혀놓는 것처럼, 한국 사회도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 24시간 내내 돌아간다. 현재 평균 야간 수면시간은 6.9시간인데, 이는 최근 100년 사이에 20%가 줄어든 결과이다. 적절한 수면시간은

8.2시간이지만 평균 낮 근무자는 약 1.3시간 잠이 부족하며, 만성적, 부분적인 수면부족이 일상적인 사건이 되었다. 노동부(2002년)의 “근로시간 실태조사”에 의하면 교대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39.9%를 차지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전세계 노동인구의 약 20%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는 통계와 비교했을 때, 국내 교대노동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2. 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영향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제로 인한 건강 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은 24시간 생체주기의 파괴에 있다. 교대근무 노동자들은 24시간 공장 가동과 주야 연속교대제에 의해서 밤낮의 주기가 바뀐 상태에서 일하게 됨에 따라 24시간 생체주기가 파괴되고, 이로 인해 암(유방암·직장암·대장암·전립샘암), 뇌심혈관계 질환(돌연사·심장마비·뇌졸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콜레스테롤의 과도한 증가), 수면장애 및 교대부적응증후군(수면박탈·불면증·만성피로·각성도 감소·집중력 감소·생리적 리듬의 부조화로 인한 교대시차증후군), 소화기계 질환(위염·위궤양·간장질환), 내분비계 질환(당뇨병)을 앓게 된다. 독일 수면의학협회에 따르면, 야간 교대노동자의 80%가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반 노동자의 신경장애 비율은 25%인 반면 교대노동자는 60-70%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건강 장애는 중국에 야간교대 노동자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데, 대체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직군에 속한 노동자의 평균수명이 78세인 반면,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평균수명은 65세에 그치고 있다. 야간교대 노동자의 어린 자녀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별거나 이혼 확률이 2~6배 높다는 연구를 떠나, 야간근무가 노동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야간교대근무의부작용을개인의문제가아닌 공공보건(public health)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24시간 생체주기가 파괴됨으로써 여성호르몬 분비기전에 장애를 일으켜 재생산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월경주기가 파괴되며, 자연유산이 증가하고, 저체중 출산과 조산이 증가하며, 유방암이 증가한다.

최근 덴마크에서는 야간교대근무를 ‘공공보건’ 문제로 다루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20~30년간 일주일에 최소 1일 정도 야간근무를 했던 **스튜어디어의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린 것이다. 잠잘 때 나오는 멜라토닌은 여성호르몬의 분비를 돕고 유방암세포의 작용을 억제하여 유방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의 멜라토닌 수치가 낮다는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덴마크에서는 야간교대근무와 유방암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못했을 지라도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결과와 정황에 입각해 유방암 발병에 야간근무에서 노출된 인공조명이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보상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한국에서도 2010년 말 자동차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의 수면장애를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생체리듬을 교란시키는 교대근무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그룹 2A)로 지정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야간노동은 그 자체로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유해물질인 다이옥신(IARC 지정 그룹 2B)보다 한 단계 높은 발암요인이다. 따라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야간노동을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규제하고 금지해야한다.

3. 소비자 및 지역주민: 빛공해의 건강영향

24시간 속도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빛공해에 노출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은 불빛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을까? 단기적 건강영향으로 수면장애, 밤의 수면장애로 인한 낮의 졸림,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주기 변화로 인해 만성 소화불량, 우울증, 인격변화, 심혈관계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며,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기도 한다. 인공조명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태양에서 나오는 자연 자외선보다 2배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피부와 눈에도 영향을 준다. 이는 아기가 자는 방에 불을 켜 놓으면 커서 근시가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강한 인공조명은 피부를 빨리 늙게 하고, 빛 알레르기나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빛공해는 주로 야간에 생성되는 멜라토닌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을 억제한다. 멜라토닌은 사람의 성장과 수면주기에 영향을 주며, 체내 각종 분비선과 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신체의 생물학적 시계를 조정해 면역력 강화, 암과 노인성 치매 등을 예방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행한 ‘야간의 과도한 빛이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된 지역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생 비율이 37% 높았다고 한다. 이처럼 24시간 속도사회는 야간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 뿐 아니라 빛공해를 통해 소비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1〉 유방암을 중심으로 본 빛공해와 야간교대근무의 건강영향 연구

야간교대근무 = IARC 2A급 발암물질	직업	야간교대근무를 한 간호사의 유방암 발병률이 높음.	Kolstad, 2008
	직업	야간교대근무를 한 비행기 승무원의 유방암 발병률이 높음.	Megdall, 2005
	문헌 고찰	장기간 야간교대근무의 경험이 유방암 위험을 1.5~2.5배 높임.	Stevens, 2009
	고찰	147개 마을을 찍은 위성사진과 암 발병률 지도를 비교한 결과, 빛공해가 강할수록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함. 폐암의 경우에는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음.	Kloog, 2008
	역학연구	빛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 비해 빛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유방암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음.	Flynn-Evans, 2009
	대조군 연구	한 집단 여성들의 혈액을 낮과 밤으로 나누어 채취하고, 다른 집단은 멜라토닌 분비를 막는 약을 투여한 후 밤에 채취하고, 나머지 집단은 밝은 전등에 노출시킨 후 채취하여 실험쥐에 투여함. 연구 결과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밤에 채취한 혈액의 경우 유방종양의 성장과 증식이 억제된 반면,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이 효과가 감소함.	Blask, 2005

4. 개인취향을 넘어, 사회의 슬로우라이프

내가 일하는 여성환경연대에서는 자연의 속도에 맞게 느림의 시간을 실천하자는 ‘슬로우라이프’ 운동을 한다. 그런데 개인의 의지만으로 ‘슬로우라이프’를 택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백석 시인 식으로 말하자면 “자기 위에서 자기를 굴리는 것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사회의 속도에서 이탈하는 순간 한 발 재쳐 디딜 곳이 없어질 것만 같은 ‘24시간 속도사회’에서 그 속도와 하등 상관없는 초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인간을 쉬게 하고 마트를 휴가 보내고 24시간 돌아가는 속도사회의 밤을 ‘셋 다운’하는 사회적 합의와 규제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1910년대 이후 관광업을 제외하고 일요일에는 가게가 영업을 하지 못하고 대형 마트는 주 72시간 이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대형마트가 오후 8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고 일요일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유리피안 드림’이 나오기까지는 그만큼 사회적 합의와 규제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간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심야에 문을 열었던 편의점, 짬뽕방 등 이외에도 놀이동산, 미용실, 영화관, 옷가게 등이 야간연장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24시간 영업하는 미용실이나 퀵 서비스 업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형 마트들 역시 24시간 영업을 하는 점포들을 확대하고 있으며 백화점도 기존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있다. 사람들은 “편리하고 좋네”라며 언제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증가를 즐거워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편리하고 좋네”를 연발할수록 ‘유리피안 드림’은 더욱 멀어진다. 편리함에 대한 기준과 생활방식과 습속이 24시간 속도사회에 맞춰지기 때문이다. 저녁 8시에 문을 닫는 백화점에서는 연장영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비자가 많지만,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백화점에서는 유독 연장영업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도대체 응급실도 아니고 홍대 거리에 있는 클럽도 아닌, 쇼핑이라는 전 국민의 일상 활동이 밤 12시 넘어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누군가는 불을 밝힌 가게에서 야간교대근무를 한다는 것, 심야전기를 위해 핵발전소가 맹렬하게 돌아간다는 것, 대형마트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외면으로 동네 가게들이 망해간다는 것, 그리고 야간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건강이 악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24시간 속도사회의 결과이다. 소비자의 ‘편리하고 좋네’가 지화자로 끝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면 건강보험료는 높아지고 핵폐기물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위험해지고 동네 자영업이 문 닫을수록 중산층은 사라지는 세상의 이치 때문이다. 비용만이 아니라 누군가는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는 고통을 껴안아야 한다. 그리고 그 감당은 온전히, 개인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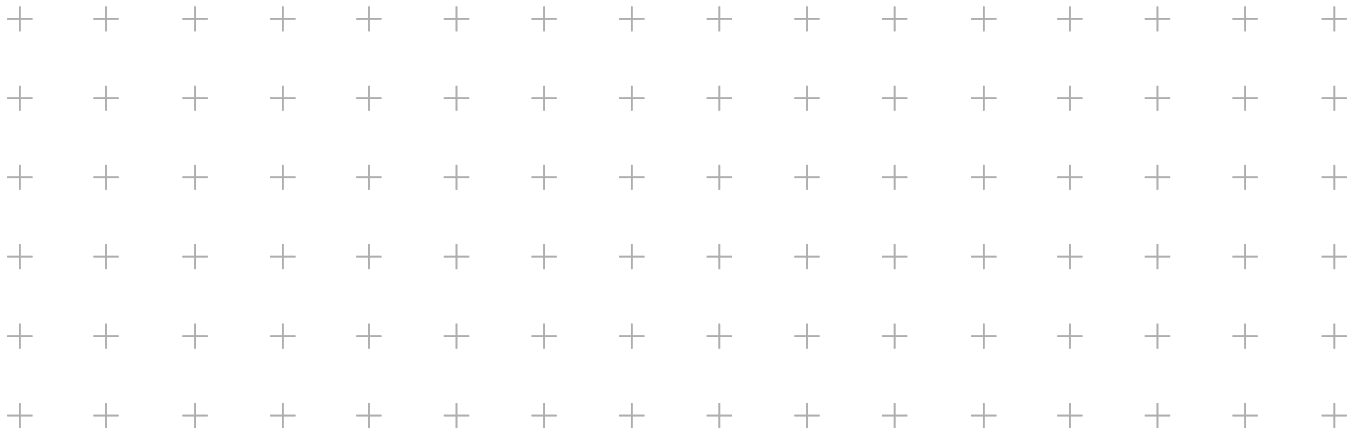
5. 밤에는 자자!

24시간 연장영업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 대형마트는 ‘친환경’을 컨셉으로 내세운다. 특히 여월에 위치한 매장은 태양광, 풍력발전시설, LED 조명, 형광등 밝기 조절, 중수 이용 등 건물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기술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친환경’이나 ‘지속가능성’이란 단어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마음껏 소비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냥 기본만 해도 좋다. 밤에는 불을 끄고 점포 문을 닫고 노동자도 잠자고 소비자도 쉬는 삶을 배려하는 것이 먼저다. 미국의 반소비주의 단체 ‘에드버스터’에서는 빈 카트를 끌고 ‘월마트’를 돌아다니는 ‘휠(wheel)마트’ 데이를 만들었다. 우리는 24시간 속도사회의 불을 환히 밝힌 대형마트에 앞에서 색색의 파자마를 입고 구르부를 맡고 우리만의 캠페인을 만들고 있다. 토론회와 캠페인을 넘어 24시간 속도사회를 늦추기 위해 대형마트의 야간영업과 365일 영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 자료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references

임종한, “야간/교대근무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멜라토닌과 유방암을 중심으로”, 〈여성환경연대 자료집〉, 2009, 24~25쪽.

손미아, “야간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겨레신문 2011.6.14일자 ‘왜냐면’ 코너



토론 2 | 휴일에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전기요금에 만들어진 유통업체의 심야 연장 영업

김보영 환경운동연합 간사

전기요금이 만들어낸 유통업체의 심야 연장 영업

김보영 환경운동연합 간사

들어가며

아침 9시, 24시간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에 가본 적이 있다. 사방에 불을 밝힌 가운데, 계산하는 직원 몇 명에 손님은 손가락에 꼽는 수준. 밤새도록 매장에 불을 켜 두는데, 남는게 있는가 궁금해질 정도였다.

이처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24시간 영업을 하는 이유를 에너지 측면에서 보자면, 값싼 일반용 경부하 요금¹⁾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밤에 불을 더 켜 놓은들 추가 발생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국내 전기요금 전반에서 시작하여, 일반용 경부하 요금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전기요금(제도)이 유통업체의 심야 연장영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 전기요금

지난 5월 25일 뉴스에 의하면 정부가 7월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식경제부가 평균 7.6%의 인상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6월 9일에는 전기요금 로드맵 작성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인상을 다소 늦출 것을 시사했지만, 그간 제시된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기요금 현실화는 예상되고 있는 바이다.

1) '부하' 라는 것은 에너지 소비를 말한다. 경부하 요금이란, 부하가 가벼운(전기를 별로 쓰지 않는) 23시부터 09시 사이에 적용되는 요금을 뜻한다.

〈전기요금 원가 보상율〉

구분	07	08	09	10추정
원가보상율(%)	93.8	77.7	91.5	90.9

한전의 경영지표, 정한경 〈전력소비 급증, 원인과 해결방안〉 재인용

〈가정용 에너지 가격 국제비교(전력부분 발체)〉

(단위 : USD/TOE)

	한국	미국	일본	OECD평균
전력가격	894.4	1342.7	2647.0	1,758.1

OECD/IEA, Energy Price & Taxes, 2010 2nd quarter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전기요금의 원가 보상율은 낮은 수준이고, 전력 가격도 여타 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자료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사실, 전기요금을 다른 나라와 단순 가격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각 국가별 1인당 GDP 및 구매력 지수가 다르고, 전력 수급망, 에너지 자립도 등 주어진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의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할 때의 전력가격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가격 측면에서 에너지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석유가격 기준 에너지 가격 비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석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력	129.6	128.9	113.1	99.3	85.9	82.7	83.6	64.8	83.3
OECD	석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력	262.7	276.4	254.4	227.0	183.4	173.8	175.4	137.1	200.9
일본	석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력	440.8	461.0	433.3	397.0	313.7	250.8	252.0	193.3	307.5
미국	석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력	256.5	279.2	244.3	224.1	177.6	169.6	154.2	132.2	181.3
영국	석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력	369.5	445.3	385.6	346.0	270.5	279.0	275.9	218.4	

OECD/IEA, Energy Price & Taxes, 2010 2nd quarter

위의 표를 보면, OECD 주요 국가 비교할 때, 한국의 석유가격 대비 전력가격은 무척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전기는 석유에서 생산되는 2차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석유가격 대비 전기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고, 심지어 2004년부터는 낮게 책정되어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값싼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더욱 저렴한 경부하 요금

기본적으로 전기는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다. 전기로 열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열에너지→전기에너지→열에너지’의 과정을 거치며 전환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 사용의 증가는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을 불러온다.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이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화를 불러왔다면, 현행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국가별 1인당 전력 소비량 지수〉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OECD평균
1인당	100	89	63	85	78	91
주거부분	100	195	.	210	147	209

조선일보 5월 25일 기사 인용

위의 표를 통해 한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이나, 주거부분의 소비는 오히려 적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전력 소비의 주 책임자는 주거 이외의 부분, 산업계와 상업계라는 것이다.

(1) 국내 전기요금 체계

그런데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산업용, 일반용(상업 건물이 주로 이용)의 요금이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주택용에만 6단계의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겨울철 전기 난방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떠안게 되는 반면, POSCO에서는 고철을 녹이는 고로를 가동하는데 전기를 이용하며 대형마트가 손님이 적은 심야에도 영업이 가능한 것이다. 요금 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더욱 명확해 진다.

현행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²⁾

2) 한전 사이버 지점 (<http://cyber.kepco.co.kr>) ‘전기요금표’ 참고.

종별	적용범위	요금체계	
주택용	주거용	계약전력 ³⁾ 3kW 이하 100kWh마다 달라지는 6단계 누진요금제	
일반용	공공, 영업용	갑	계절별 차등 (7 ~ 8월 고율)
		을	월 계약전력 1,000kW이상 시간대별 차등(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교육용	학교, 박물관 등	계절별 차등 (7 ~ 8월 고율)	
산업용	광업, 공업용	갑	계절별 차등 (7 ~ 8월 고율)
		을	계약전력 300kW이상
		병	계약전력1000kW이상 시간대별 차등(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농사용	농업, 어업용	단일요금(갑,을,병 차등)	
가로등	가로, 보안등	단일요금	

이를 바탕으로 7월 한 달 간, 매일 매시간 1kWh씩 합계 720kWh 전기를 사용 한다고 가정하고,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종별로 비교해 보았다.⁴⁾

시간	전기요금(원/kWh)				요금체계
	주택용	산업용(병)	요금체계 ⁵⁾	일반용(을)	
24~1		43,975	심야시간	43.4	경부하
1~2	▼처음100kWh까지 53.4	43,975		43.4	
2~3	▼다음 100kWh까지 91.2	43,975		43.4	
3~4	▼다음 100kWh까지 135.1	43,975		43.4	
4~5	▼다음 100kWh까지 196.3	43,975		43.4	
5~6	▼다음 100kWh까지 294.5	43,975		43.4	
6~7	▼다음 100kWh까지 531.9	43,975		43.4	
8~9	▼500kWh 초과	43,975		43.4	
9~10		109,975		주간시간	
10~11	100*53.4	109,975	88.8		
11~12	+100*91.2	109,975	153.95		최대부하
12~13	+100*135.1	109,975	88.8		중간부하
13~14	+100*196.3	109,975	153.95		최대부하
14~15	+220*531.9	109,975	153.95		

3) 전기공급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동의한 전력.

4) 최대한 일정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주택용은 '고압용' 사용, 일반용과 산업용은 여러 종류의 고압용 요금을 평균했다. 실제 전기 요금은 사용량에 기본요금,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지만, 여기서는 전기 사용량만 측정했다. 산업용(병)과 일반용(을)은 동시 공급 가능 전력 1000kW이상 계약자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제도이며, 주택용은 6단계로 누진 요금이 적용된다.

시간	전기요금(원/kWh)				요금체계
	주택용	산업용(병)	요금체계 ⁵⁾	일반용(을)	
15~16		109.975		153.95	중간부하
16~17		109.975		153.95	
17~18		109.975		88.8	
18~19		74.875	저녁시간	88.8	
19~20		74.875		88.8	
20~21		74.875		88.8	
21~22		74.875		88.8	
22~23		74.875		88.8	
23~24			43.975	심야시간	
월전기료 (원)	194,068	1083.9*26 +43.975*24*4 =32,403		2002.95*26 +43.4*24*4 =56,243.1	

* 산업용, 일반용 일요일, 공휴일에도 경부하 요금 적용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은 기본 전기 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경부하 할인이 적용되고, 주택용 전기요금과 달리 누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해도 큰 부담이 없다. 산술적으로 비교했을 때 같은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산업용은 6배, 일반용은 3.5배 가량의 전기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2) 저렴한 경부하 요금이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전기요금체계에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할인 혜택이 늘어난다. 전기로(전기를 이용해서 고철을 녹이는 고로)를 사용하는 당진의 현대제철에서는 지난해 5,180억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했는데, 이는 일반가정 140만 가구의 전기요금에 해당된다.⁶⁾ 이 금액은 시간대별 차등 요금이 적용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따른 것으로, 같은 사용량을 누진율이 적용되는 주택용으로 환산하면 현대제철은 5조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했어야 했을 것이다. 이는 1350만 가정의 전기소비와 맞먹는 금액이다.

어떤 커피점은 낮이건 밤이건 관계없이 항상 창가에 전등을 켜놓고 있으며, 상점의 천장은 전등이 안쪽에 들어가도록 설비를 해 놓았다. 일반용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 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에서는 겨울철 가스보다는 전기난방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며, 겨울철에는 지난 겨울철 전력 피크의 주범인 전열기 사용이 급증하게 된다.

5) 산업용 요금체계는 계약전력 300kW 미만, 300~1000kW, 1000kW 이상의 세가지로 나뉘고 300~1000kW 미만일 경우 '주간, 저녁, 심야시간대' 로 나뉘고 1000kW 이상일 경우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요금체계를 적용받는다.

6) mbc 뉴스 데스크 4월 23일

(3) 24시간 영업시 추가 발생 비용

분석의 범위를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을중 요금으로 좁혀보자. 앞서와 같이 한 달간 시간당 1kW 사용을 전제로, 대형마트가 24시간 영업을 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았다.

	현행요금체계 하의 월 전기요금(원)	심야와 공휴일에 중간부하 요금 적용시 월 전기요금(원)
9시~23시 영업		1,568.95(1일 요금)*26일 + 43.4(휴일 경부하요금)*14시간*4 =43,223.1
24시간 영업	56,243.1	2,456.95(1일요금)*26일 + 88.8*24*4 =72,405.5
추가 비용 증가분 (증가율)	13,020(23.1%)	29,182.4(67.5%)

현행 체계에서는 심야영업을 추가로 할 경우 전기 사용 비용 추가분이 23.1%이지만, 심야에도 중간 부하를 적용시킨다면 비용 추가분은 67.56%로 부담 비중이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즉, 어떤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지고, 이는 사용량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전기요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현재 사회적으로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이 많이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력의 평균 원가는 kWh당 85.73원이지만 요금은 평균 76.63원이다(생산 원가의 89.4%) 반면 주택용 전력의 평균 원가는 kWh당 127.17원인데 요금은 평균 119.85원이다(원가의 94.2%). 2008년 기준 전체 전기의 15%를 소비하는 주택용 사용자가, 전체 소비의 53%를 소비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충당하는 꼴이므로⁷⁾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필요성이 있다.

〈2008년 계약종별 전력 소비량〉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합계
사용량 (백만kWh)	7,878	87,827	5,783	203,475	8,869	2,847	19,391	386,070
비율(%)	15	23	1.4	53	2	0.7	5	100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소, 〈전력소비 행태분석〉, 2009

* 심야전력은 현재 추가 신청을 받고 있지 않음.

7) 조선일보 5월25일자 기사 인용

여기서 더 나아가 일반용 경부하 요금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하다. 그간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및 경부하 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이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일반용 요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없던 실정이다.

지난 겨울 전력피크가 발생한 시각은 오전 11시 ~12시, 오후 4시~6시경, 식당 등의 서비스업에서 전기난방을 일제히 가동하는 시간대이다. 최대부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기소비가 일어나는 이유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기본 저렴한 데다가 주택용과 달리 누진율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써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즉, 산업용 뿐 아니라 일반용 전기요금에서 경부하 요금을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누진율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에너지의 효율적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며

캐나다의 심리학자 스탠리 코렌은 「잠 도둑들」이라는 책에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이후 현대인들은 점점 더 잠을 뺏기고 있다고 개탄했다. 애초부터 ‘깨어있는 밤’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한 밤’이 제공됨에 따라 ‘깨어있는 밤’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를 전력 정책에 빗대어 보자면 애초에 ‘전력과잉 소비’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값싼 전력’이 제공됨에 따라 ‘전력 과잉 소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난 것이다.

대형마트의 심야 연장 영업은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주변 중소상인의 영업권 면제서도 폐지되어야 하지만, 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 낭비를 막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형마트 야간 영업을 할 경우 마트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소비분 외에도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자동차로 인한 추가 에너지 소비 등 2차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반용 경부하 요금체계를 통해 값싸게 제공되는 전기는 24시간 영업을 통해 전기 과소비를 불러일으키는 유인을 제공한다. 유통업체의 24시간 영업 제한은 일반용 경부하 요금 체계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도 고려되어야 한다.



토론 3 | 휴일에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대형마트·SSM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일제 도입은 중소기업의 생존 방안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대형마트·SSM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일제 도입은 중소상인의 생존 방안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 대형마트-SSM의 현황

- 대형마트는 1993년 문을 연 이래 14년 동안 5,260배 성장, 50억 규모였던 매출액이 2006년, 26.3조에 이르는 상황
- 2010년 9월말 기준 대형마트 423개(117,667명 당1개)¹⁾ SSM 794개(62,697명 당1개)
대형마트+SSM = 40,898명당 1개
- 2010년에 총 33개의 대형마트가 문을 열었고, 전년도에 비해 매출 증가액은 약 2.6조원 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재래시장 130개의 총매출에 해당하는 액수.
- 2004년 대비 2008년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매출액의 증감을 보면, 이 기간 동안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9.2조원이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그만큼인 9.3조원이 줄어들었음.

○ 상도의도, 공정한 경쟁도 필요 없다... SSM의 무분별한 확산과 대형마트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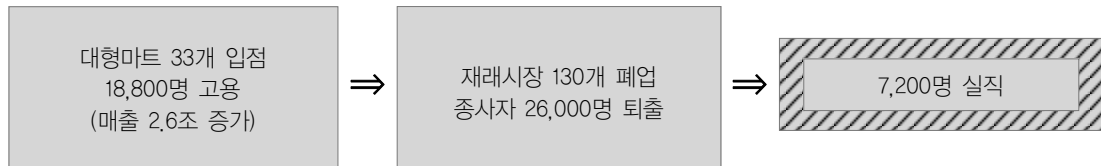
- 재벌대기업들은 2007년 무렵부터 SSM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엄청난 속도로 점포수를 늘려가며 실제로 골목 상권을 잠식해 가고 있음. 특히 SSM업체의 빅3라 불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삼성테스코), 롯데슈퍼, GS슈퍼의 과열경쟁으로,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봇물처럼 터진 2009년 한 해 동안만 무려 200개의 SSM이 개설되었고, 2010년 상반기에도 114개의 점포가 증가했음. 또 최근 3년간(2006년~2009년) 빅3 기업의 점포수는 3배(223개), 매출액은 평균 2.2배(115.6%)가 증가하였음. SSM(재벌슈퍼) 규제가 지연되면서 SSM(대형마트는 제외한 수치)이 최근 820여개²⁾를 넘어섰고, 곧 1천개도 넘어설 전망이다. 그와 동시에 그나마 가족들의 생계를 근근이 꾸

1) 삼성경제연구소, 적정 대형마트수 인구 15만명 당 1개, 270~80개

려가고 있던 전국의 중소자영업자들은 지금 엄청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음.

- 반면, 동네 슈퍼마켓의 점포수와 매출액은 급감하였음. 2009년 소형 슈퍼마켓(매장면적 150㎡이하)의 점포수는 7만 9천 2백개로 2005년에 비해 2만개 이상이 줄어들었으며, 대형마트 및 SSM 진출전 3년과 진출 당해년을 포함한 진출이후 3년간 매출액을 비교해본 결과 점포당 월평균 4,132천원의 매출이 하락하였으며, 중소유통업체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 감소를 추정하면 약 **5천만원(₩4,132,005 × 12 = 49,584,060원)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0년 8월 중소기업연구원 피해 현황 보고서>

○ 대형마트 확산은 지역경제 파탄



○ 매출 전액은 본사로, 불공정 거래도 위험수위를 넘었음.

- 매출액을 본사로 올려 보내 지역의 부를 고갈시키고, 최소한의 지방세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음.

<전북사례> 1조원(2010년) 연매출 수도권 역외유출 [전주시의회 분석 자료]

- 중앙이 통제하는 일괄구매 방식을 써서 지역 생산자의 판로를 위축시키고 있음.
- 납품업체에게 추가적인 단가인하 압력, 상품 독점을 위한 압력, 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의 불공정 거래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상품 구매율을 살펴보면, 2010년 대전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전시의 대형마트의 상품 총매입액 중 지역상품 구매율은 1.5%에 불과함. 같은 해 전주시가 조사한 대형유통업체 지역상품 구매율도 단지 10%에 불과함.

○ 일자리창출 -대형마트의 고용효과가 재래시장의 31%에 불과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총매출액은 각각 28.9조원, 26.7조원으로 그 수치가 유사했다. 반면 재래시장 취업자 수가 36만 2960명에 달한 반면 대형마트 취업자 수는 11만 3607명에 불과함. 대형마트의 고용효과가 재래시장의 31%에 불과함. 2010년의 경우 대

2) <머니투데이> 11.17일자 기사에 의하면 현재 SSM 개수는 가맹점을 제외하고 820여개를 넘어섰음.(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 기준이므로 미회원사인 경우를 감안하면 더 있을 수 있음. 예를 들면 중소기업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았음)

형마트 1개의 고용인원이 평균 315명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선 경우 산술적으로 그 지역 대형마트 고용이 315명 늘어난 대신 그것의 3.2배인 1000명 이상의 재래시장 상인이 일 자리를 잃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 또한 최근에는 SSM을 통한 소매업진출말고도, 신세계 이마트에서는 기존의 매장(소매업)을 창고형 대형 할인 매장³⁾(도매업)인 트레이더스로 전환 출점을 시도(2011' 6개)하고 있고, 이마트몰이라는 온라인 망을 통해서도 일반 슈퍼마켓 업주를 대상으로 도매업에 진출해 있음.

○ 그와 함께, 전체 자영업자 수치는 2007년 604만9천명이었으나 2009년 571만1천명을 기록하여,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2년 동안 33만 8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월 수치를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자영업자의 숫자가 55만 명 가까이 줄어들어 자영업자 숫자가 547만5000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550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음.

○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소비자)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

- 2009년 10월 13일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 1000명의 응답자 중 73%가 허가제 도입에 찬성.
- 2009년 10월 6일 KBS 시사기획 '쌈'이 2987명의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역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70%를 넘고, 기업형 슈퍼마켓과 동네상권 경쟁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76.5%였음.

○ SSM 규제법 그 이후 ..

〈기사 1〉 유통법 허점 많아 '기업형 슈퍼' 입점 못 막았다

경향신문 2011-06-16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 법 통과 후에도 7개월간 70여곳 신설 강행
- 상인들 철회 시위... "재래시장 지원 나서야"

지난 3월 서울 상계6동에 들어선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에서 주변 영세 상인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중략〉 -----

강북구 롯데마트 입점 예정지는 건물에 입주했던 30여개 점포들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곳이다. 그러나 개발 뒤 마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면서 이 건물 근처에서 영업

3) 창고형 대형 할인 매장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미국 자본인 코스트코(94 ' 서울 양평점 1호 출점이후 6개점포)도 있음

하던 또 다른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중략〉 -----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재래시장이나 지역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 입점 공포’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법 통과 후 롯데슈퍼(27개)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16개), GS슈퍼마켓(19개), 이마트 에브리데이(2개) 등 4대 SSM은 70여개의 신규 점포를 열었다. 2010년 한 해 동안 이들 4개 업체가 230개의 새 매장을 오픈한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법 통과 이후 SSM 개점 작업을 하던 전국 34곳에서 지자체를 통한 사업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중략〉 -----

하지만 조정 작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게 문제다. 지자체가 유통업체에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는 권고뿐이다. 전국 시·도 및 구청의 SSM 관련 조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대형유통사 및 SSM 운영자에게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권장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구속력이 없는데다 입점을 강행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 상위법인 유통법에 강제 조항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 기업형 슈퍼(SSM) 현황

	신규 오픈 점포 수		총점포 수	지자체가 사업조정 중인 점포 수
	2010년	2011년		
롯데슈퍼	87개(14)	13개	290개	5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66개(9)	14개	248개	28개
GS슈퍼마켓	67개(15)	4개	209개	2개
이마트 에브리데이	7개(1)	1개	19개	0개

* () 안은 유통법 통과 후인 2010년 11~12월 오픈 *2011년은 1~6월 현재

(자료:각 업체)

○ 우리 헌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우리 헌법 제119조 2항도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3조 2항과 3항은 더 직접적으로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즉 우리 사회를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와 무분별한 이윤 추구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권능과 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것임. 이렇듯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이익추구는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이 부과됨.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인 것임.

○ 국내 규제 도입 사례

〈사례 1〉

[기사] 청주, 신규 대형점포 밤 11시~오전 8시 영업금지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0-12-10 01:05 [중앙일보 신진호.이수기]

청주시 조례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영업시간 제한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8시
규제 대상	조례 공포 후 새로 등록하는 영업면적 300㎡ 이상 점포
등록 제한	전통시장과 취급품목 50% 이상 중복 점포
위반시 조치	허가 철회

자료: 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에서 새로 문을 여는 대형마트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주시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는 기존 대형마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주시의회는 조례가 공포된 뒤 기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14조)는 3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영업을 할 경우 시장이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품목이 전통시장과 50% 이상 중복될 경우에도 등록이 제한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청주시장은 조건부 허가와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는 홈플러스가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 58곳, 24시간 영업하는 점포 30곳이 있다. 24시간 영업 점포 중 한 곳이 청주에 있다. 롯데마트는 88곳의 점포 중 54곳이 자정까지 영업한다. 이마트는 전국 129곳 중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가 86곳, 24시간 영업 점포는 10곳이다. 이마트 측은 “24시간 영업 점포는 십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사례 2〉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한 시장 잠식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이 붕괴된 지 오래인데, 설상가상으로 주택가 골목의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략〉

우리는 오늘,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유통체제를 바로잡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다 음

하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 시간을 12시간이하로 하고 월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 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가 강력히 대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1년 2월 18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해외 규제 사례

3. 주요 국가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사례

국가	영업시간 제한 사례 및 내용
독일	○ 상점영업시간 제한법 : 모든 상점에 공통으로 영업시간 제한 - 모든 상점은 일요일, 공휴일에 폐점해야 하며 - 평일, 토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개점할 수 있다
이탈리아	○ D.L.(Decree Legislative)법 - 일요일, 공휴일에 폐점해야 하며 - 평일,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개점이 허용된다.
프랑스	○ 노동법에 의거 영업시간을 규제 - 프랑스에서도 일요일에는 폐점해야 하며 - 평일, 토요일에는 오후 10시까지만 개점이 허용된다.
영국	○ Sunday Trading Act(1994년) - 일요일만 규제된다. 일요일에는 10~18시 중 6시간만 영업이 가능하며 -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점포에 대해서는 5만 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	○ 소음방지법 - 일본도 야간소음방지를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 WTO와 한-EU FTA 와의 충돌 문제

6월 18일(토) 청와대에서 진행된 내수경제 살리기 장관 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제기한 대형마트, 백화점 영업시간제한에 대해 1)시장경제경쟁원리에 위배 2)WTO, FTA 협정에 위배 된다고 문제제기가 나옴. 또한 지난 5월 4일 한-EU FTA 비준동의시 여야정 합의 사항중 1) 유통법, 상생법을 실효적으로 운용하겠다. 2) 7월1일 발효 이후에라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정을 논의 하겠다.라고 하였음. 그렇다면 중소기업을 살리고 내수를 살리는데 필요한 조치인 영업시간규제와 의무 휴일제 도입을 취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WTO, FTA 조약에 대해 즉각적으로 재개정 논의를 해야 할 때 임.

참고로 지난 5월 22일(수) 참여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는 감사원에 외교통상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에 따른 특별법 제 3조 2항에 근거해서 재협상추진조항에 대한 법령 위반 및 직무유기 건으로 감사청구를 하였음.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조항중

제3조 (협정상의 권익 확보) ① 정부는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한다.

② 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